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6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6.

발 의 자 : 김위상 · 김미애 · 김소희
배준영 · 김기현 · 우재준
조지연 · 신성범 · 이인선
김선교 · 김형동 · 추경호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그 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, 멸종위기종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.

멸종위기종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이들 개체가 폐사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되거나 번식되는 경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, 해당 개체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움.

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고,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이들의 폐사, 이동, 증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, 멸종위기종의 보호

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 및 제20조 등).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(이하 “멸종위기종”이라 한다) 개체 현황

제20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보유동물 중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, 개체 수 및 반입, 반출, 증식, 폐사에 관한 기록

제21조제1항 중 “1회”를 “1회(제20조제4호의 자료는 2회)”로 한다.

제25조제1호 중 “멸종위기종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)”을 “멸종위기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실태조사 및 평가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4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	제6조(실태조사 및 평가 등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(이하 “멸종위기종”이라 한다) 개체 현황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운영·관리 기록 및 보존)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, 해당 기록을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	제20조(운영·관리 기록 및 보존) ----- ----- ----- -----

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

<신 설>

4. (생 략)

제21조(자료의 제출)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20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자료,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1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 략)

제25조(비용지원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멸종위기종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보유동물 중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, 개체 수 및 반입, 반출, 증식, 폐사에 관한 기록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제21조(자료의 제출) ① -----

-----1회(제20조 제4호의 자료는 2회)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비용지원 등) -----

-----.

1. 멸종위기종-----

<u>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</u> <u>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)</u> 및 해양보호생물중(「해양생 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)의 보 전·복원 및 관련 조사·연구 2. ~ 4. (생 략)	----- -----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
--	--